

나이스정보통신 선불카드 이용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(이하 "발행자" 라 함)가 발행하는 "전자상품권", "모바일 쿠폰" 및 "쿠폰"(이하 "상품권")의 구매 및 이용과 관련하여, "발행자", "구매자" 및 "사용자"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01. "상품권": "발행자"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,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,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02. "구매자": "발행사"에서 발행하는 "상품권"을 구매하는 고객을 말한다.
03. "사용자": 직접 구매하거나 양도 받은 "상품권"을 물품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고객을 말한다.
04. "가맹점": "발행사"와 가맹계약을 맺고 "사용자"가 "상품권" 사용시 원장에 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.
05. "제휴 위탁사": "발행사"와 계약을 맺고, "발행사"의 의무를 대신하여 환불, 판매, 회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.
06. "판매처": "발행사"와 계약을 맺고, "발행사"의 의무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 3 조 (구매 및 인증)

01. "상품권"은 "발행사" 또는 "제휴 위탁사"가 판매를 위탁한 "판매처"에서 구입할 수 있다.
02. "상품권"은 "제휴 위탁사"와 합의하여 현금, 직불카드,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 다만,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구매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.
03. "상품권"의 최초 "구매자"는 구매 시 "상품권" 활성화(Activation)를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04. "발행사" 또는 "제휴 위탁사"는 상품권 시스템을 통하여 "상품권" 원장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, 인증에 대한 결과를 "구매자"에게 고지(인증번호 부여 또는 영수증 제공)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권종 및 충전)

01. "상품권"은 "정액권"과 "충전권", "물품교환권"으로 구분하되, "정액 권"은 권면금액 5만원, 10만원, 30만원, 50만원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, 다만, "구매자"의 편의를 고려하여 "발행사"는 권면금액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02. "충전권"은 권면 금액에 관계없이, "구매자"가 자유롭게 금액을 추가하여 구매 할 수 있으며, "기명식"은 200만원, "무기명식"은 5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 한다. 다만,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에 근거 및 구매자 편의를 고려하여 충전한도를 하향하여 변경할 수 있다.
03. "발행사" 또는 "제휴 위탁사"는 "단말기"를 통하여 "상품권"의 충전금액 및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, 충전에 대한 결과를 구매자에게 고지(인증번호 부여 또는 영수증 제공)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사용 및 양도)

01. 상품권"은 "충전형", "권종형"은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횟수의 제한 없이 일시불 구매방법으로 "발행사"와 "가맹점"에서 사용할 수 있다.
02. "상품권"의 "구매자"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양수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도 가맹점에서 전항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재 양도할 수 있다. 단, "모바일 쿠폰"의 경우 수신자 변경 후 양도할 수 있다.

제 6 조 (사용의 제한)

01. "상품권"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.
 - ① 상품권" 구매 시 인증(Activation)을 받지 않은 경우
 - ② 해당 "상품권"의 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
 - ③ "상품권"이 사용중지 상태인 경우
 - ④ 전산시스템의 오류, 통신 불능, 단말기의 고장 등 "상품권"의 사용을 위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
02. "상품권"이 위,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, 잔액에 관계없이 "발행사"는 "사용자"의 "상품권"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03. "상품권"을 불법할인, 현금유통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그러한 경우 "사용자"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제 7 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01. "발행사"는 "사용자"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관련법에서 정한 보존기간내의 거래내용을 확인해주어야 하며, 서면(전자문서를 제외한다.)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,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"사용자"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02. "발행사"는 "사용자"에게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"사용자"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 7 조제 2 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의 본사(전화번호:02-2187-2700, 주소: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번지 Credit Center Building 5F, 이메일주소: nicegiftcard@nicevan.co.kr)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오류의 정정 등)

01. "사용자"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발행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
02. "발행사"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, 다만, "사용자"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03. "발행사"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"사용자"에게 알려야 한다.

제 9 조 (유효기간)

"상품권"의 유효기간은 구매시점("권종형"은 최초구매일자, "충전형"은 최종충전일)으로부터 5 년이며,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로 결제 및 환불, 교환은 할 수 없다. 단, 이벤트 및 행사를 통하여 무상 제공된 "상품권"은 별도 표기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.

"사용자"는 유효기간 내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된다. 단, 이벤트, 행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양도받은 "상품권"은 연장할 수 없다.

제 10 조 (구매 취소의 방법)

01. 구매한 "상품권"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다. 다만, "구매자"가 "상품권"을 사용하지 않거나, 포장 등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"발행사"가 정한 일정 기간 내에서 판매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"발행사"는 취소 기한을 구매시점에 "구매자"에게 "판매처"에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02. "충전권" "상품권"의 재충전 취소 요청 시 취소요청 금액이 잔액보다 적을 경우, 취소 요청을 제한한다.

제 11 조 ("상품권"의 현금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상품권"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현금 받을 수 있다.

0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"상품권"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02. "상품권"의 결함으로 "가맹점"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03. "상품권"의 금액("권종형"의 경우 권면금액, "충전형"의 경우 최종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)의 60%이상(1만원 이하 "상품권"의 경우 80%이상) 소진 시 그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 환불 금액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환불한다. 단, 이벤트, 행사 등을 통해 무상제공(무료, 이벤트 등)받은 "상품권"의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.
04. 기타 "발행사"가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
05. 환불금액은 계좌이체 요청일 경우 제반 비용을(계좌이체 실비) 제외 후 입금된다.

제 12 조 ("상품권"의 분실과 도난 책임)

01. "사용자"의 "상품권"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혹은 도용 시 그에 대한 책임은 "사용자"에게 있다.
02. "발행사"는 "사용자"에게 "상품권"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"상품권" 번호 및 이용자의 신분이 확인될 경우, "발행사"는 해당 "상품권"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. 다만,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"상품권"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"사용자"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03. "발행사"는 정지된 "상품권"에 대하여 "사용자"의 요청 시, 해당금액만큼 잔액환불 또는 다른 "상품권"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"발행사"는 소정의 수수료를 "사용자"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위조나 변조 시 책임)

01. "발행사"는 "상품권"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"사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02.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① 사고 발생에 있어서 "사용자"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8 조에서 규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"사용자"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
 - ②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"사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"발행사"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
제 14 조 (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)

01. "발행사"는 "사용자"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,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
02. "발행사"는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03. "발행사"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"사용자"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04. "사용자"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 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전단의 기간 안에 "사용자"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제 15 조 (신용정보의 제공/이용 등)

01. "발행사"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/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업자, 신용정보제공, 이용자,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.
02. "가맹점"과 "사용자" 간에 "상품권"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, "발행사"는 "사용자"의 정보를 "가맹점"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"사용자"는 "가맹점"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위반시의 책임)

"발행사"와 "사용자"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.

제 18 조 (지급보증)

"발행사"에서 발행하는 "상품권"은 전자금융어법에 속하며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(당 "발행사"는 예치금 3 억을 통한 지급보증을 함)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고, "상품권"의 지급보증은 전자적으로 등록된 금액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.

제 19 조 (관할법원)

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"발행사"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최종개정일자 : 2015.11.04